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에너지절약협력과 서가람 과장(2110-3935), 최용균 주무관(3938)

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

- 5.16 대책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다냉방 등을 제한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,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(이하, 개문냉방영업)를 제한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.1일자로 공고하고, 6.11일부터 9.2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힘

○ **[대형건물 온도제한]** 연간 2,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(879개) 중 의료시설, 공동주택 등을 뺀 476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6℃(판매시설, 공항은 25℃)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

- **(제한대상)** 476개 대형건물은 판매시설 188개소(명동롯데백화점, 가든파이브 등), 업무시설 119개소(63빌딩·삼성생명본사 등), 교육시설(고려대, 경희대 등), 숙박시설 50개소(조선호텔, 롯데호텔 등), 기타시설 46개소이며, 공공기관의 경우는 냉방온도를 28℃이상으로 유지해야 함

- **(예외대상)**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, 강의실 등은 냉방온도 적용 예외구역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함

＊ 예외구역: 도서관, 강의실, 식품관리, 숙박시설의 객실, 실험실, 전산실, 통신실 등

○ **[개문냉방영업 제한]**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닫고 영업토록 의무화함

- **(제한대상)**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, 상점, 점포, 상가, 건물 등에 적용되며,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 됨

- **(제한행위)** 냉방기를 가동하면서, ①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, ②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, ③수동문을 받침대,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, ④출입문을 철거한 행위, ⑤접이식 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을 금지함

□ 지식경제부는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앞서 5월동안 명동, 강남, 역삼 등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상권의 냉방온도 및 개문냉방영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그 결과 에너지낭비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

○ 조사업체(총 117개소)의 평균 실내온도는 24.6℃로 여전히 과도하게 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A브랜드 커피전문점과 B브랜드 의류점의 평균온도는 각각 23.1℃, 21.5℃로 권장온도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

<냉방온도 실태점검 결과(5월)>

구분	다소비건물	은행	커피숍	화장품	의류	기타	전체
평균온도	25.4	25.5	24.5	24.8	22.6	24.9	24.6

○ 명동, 강남, 역삼 등의 매장 중 60%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으며, 특히 화장품 및 의류판매점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개문냉방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＊ 개방유형: 단순개방, 출입문개조(미닫이형, 접이식형 등) 및 철거 등(사례첨부)

□ 여름철 전력수요의 21%를 차지하고 있는 냉방기는 온도를 1℃ 더 낮출 경우 연간 냉방에너지의 7%가 더 소비되며, 7만명이 1년간 사용가능한 규모와 맞먹음

○ 외기온도가 32℃인 경우 40㎡점포에서 실내온도를 22~26℃로 유지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냉방기를 가동할 때, 문을 열어놓은 경우 2,422~2,924Wh가 소비되어 문 닫고 영업하는 경우(718~860Wh)보다 3.3~3.4배 전력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됨

외기온도	실내온도	개문시	폐문시	에너지소비비율
30℃	26℃	932 Wh	646 Wh	1.4배
	22℃	1,836 Wh	752 Wh	2.4배
32℃	26℃	2,422 Wh	718 Wh	3.3배
	22℃	2,924 Wh	860 Wh	3.4배

*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시험결과

□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 8회에 걸쳐 은행, 대형마트, 커피전문점, 화장품 및 의류판매점 등 8만여개의 냉방 다소비 다중이용업체 대표 및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

○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정실내온도 유지, 피크시간대 냉방기 가동자제, 냉방기 가동시 문 닫기, 쿨맵시 근무복 착용 등의 자율적인 협력과 동참을 요청한 바 있음

○ 앞으로는 관련 업계와 자율준수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힘

< 간담회 주요 참여 업체(협회) >

(금융권) 전국은행연합회,금융투자협회,손해보험협회,생명보험협회 등(약17,000개소)
(유통업계) 백화점협회,체인스토어협회,편의점협회 등 (약13,000개소)
(프랜차이즈) 스타벅스,카페베네,SPC그룹,롯데리아 등(약11,000개소)
(화장품판매) 아모레퍼시픽,LG생활건강,소망화장품,더페이스샵 등 (약6,000개소)
(의류판매) 제일모직,코오롱,LG패션,동일레나운,신원 등(약7,000개소)
(가전,휴대폰,자동차) 삼성전자,LG전자,SK텔레콤,KT,현대기아차 등 (약1,600개소)

□ 6월 한달간 전국 주요 상권에서 시민단체, 지자체 등과 함께 현장중심의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며, 명동관광특구협의회, 강남구상공회 등 주요 상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인 동참을 요청할 예정임

○ 중소규모 상점의 경우 협조이행여부,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냉방온도 제한대상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

□ 5.16일 발표한 "2012년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"에서 밝힌 바처럼 6월은 홍보·계도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,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*가 부과됨

* (1회) 50만원→(2회) 100만원→(3회) 200만원→(4회이상) 300만원

참고 **개문냉방영업 행위 주요 유형**





단순 개방 및 자동문전원차단





출입문 제거 또는 개조



외기차단이 되지 않는 문 설치